

시장 흐리는 ‘철새업체·유령회사’ 속아 낸다

비상, 2016 강원경제 (3)건설

을 한 해 도내 건설시장에서도 발주 물량 감소, 경쟁 심화 등이 이어지면서 지역업체의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다.

■ 발주 물량 감소 우려=올해는 공사 발주 물량 증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반·시설공사의 발주가 대부분 마무리된 데다 대형 SOC 사업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올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발주 물량이 4조원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4년은 4조2,309억원, 지난해에는 4조395억원으로 동계올림픽 관련 공사

도내 발주 물량 감소·경쟁 심화

중소업체 ‘이중고’… 경영난 우려

도 실태조사 통해 현안 해결 기대

로 예년에 비해 공사 물량이 크게 늘어났었다.

공사발주 물량 감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도내 건설업체들이 수주한 공사 물량은 올림픽 관련 공사가 본격화된 2012년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집

계됐다. 2015년 1~11월 종합건설업체의 수주금액은 1조986억원으로 2012년 1조 1,646억원, 2013년 1조3,157억원, 2014년 1조1,190억원 등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왔다. 이 같은 공사물량 발주 감소에 외자·철새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지역 중소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

■ 철새업체 퇴출 기대=발주 물량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역 건설업계 최대 현안인 철새업체 퇴출이 본격화되면서 도내 건설시장 질서 확립이 기대되고 있다. 도는 위장전입 건설업체인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3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역 건설현장에서는 공사 물

량 확보와 각종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는 위장전입 업체 퇴출이 시급하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도는 매년 건설업 자본금 위주 조사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숙아내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페이퍼 컴퍼니는 서류상으로만 도내에 건설업 등록만 한 업체로 지역 물량을 따내면 하도급을 주고 실제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아 부실시공, 임금 체불, 지위 남용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표준품셈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고 공사비 하락 원인으로 지적된 실직공사비 대안으로 표준시장단가도 신설되면서 공사비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위운기자 faw4939@

유일호 부총리 후보 “동서고속철도 필요”

유일호·경제부
총리 겸 기획재정
부 장관 후보자(사
진)는 11일 서울~
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사업에 대해
“중요성이 있다”며 사업 필요성을 강
조했다.



민국의 도약을 위해 필요하다는 새누리당 정문현(속초·고성·양양) 국회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 후보자는 또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장관 당시 동서고속철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던 기존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홍현표기자 hphong@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
사청문회에서 동서고속철이 미래 대한

2면에 계속

유일호 부총리 후보 “동서고속철도 필요” -1면에서 계속

유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례 없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동서고속 철의 사개(터널 내 수직갱도)비용을 반영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KDI가 미 반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예타 전제조건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면 수용을 하게 돼 있

다”고 덧붙였다. KDI는 방재측면에서 사개가 필요한 만큼 예타 사업비에 사개사업비(약 2,300억원)가 추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지금까지 사개사업비가 반영된 사례가 없고 평균 단가를 적용하는 예타 지침에도 위반된다며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 2016.1.12(화) 건설경제 】

지자체 건설공사

신기술·특허업체 '甲질' 못한다

지자체 건설공사에서 신기술이나 특허 공법에 과도한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보유업체를 하도급으로 계약해야 하는 불합리한 행태가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 예규에 포함된 '계약담당자 주의사항'을 대폭 추가한 개정 예규를 마련해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방계약 예규에서는 계약담당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주의사항'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 발주나 입찰 계약이 많지 않은 일선 지자체에서는 전문성 부족 등으로 분쟁이 많았다.

특히,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해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지자체 등 발주기관이 건설공사에 특정 신기술을 적용하도록 한 경우 시공사와 신기술 보유업체가 비용 등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신기술 보유업체의 과도한 사용료나 하도급업체 지정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발주기관이 지정한 신기술·특정공법·보유자와 계약을 하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을 지자체에 귀

행자부 지방계약 예규 개정 발주기관 사전계약 의무화 과도한 사용료 지불 등 개선

속하는 것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신기술 보유업체의 무리한 요구를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 지방계약 예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계약담당자가 하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을 대폭 강화해 명문화했다.

먼저 발주기관이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사를 발주하는 것을 금지했다. 발주기관이 해야 하는 일을 시공사에 미루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발주기관의 사전협약 미체결 또는 신기술 보유자의 부당한 요구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개정 예규는 이와 함께 발주기관이 사용협약 체결 시 하도급대금 등과 관련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했다.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의 하도급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추가했고, 계약을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하지 않도록 했다.

새로 시행된 지방계약 예규에서는 과도한 입찰참가제한도 금지했다.

입찰공고, 설계서 등에 특정규격이나 모델, 상표 지정을 금지했고, 일반화된 공사의 실적이나 지역, 기술 보유상황에 대한 중복 제한도 막았다.

실적을 견수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도 금지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공동계약 제한도 하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문제가 발생해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했다"며 "건설사가 입찰보증금 귀속에 부정당업자 제재 때문에 신기술 보유업체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같은 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

남는 건 '손해' 뿐… 갈길 먼 公共공사비 정상화

올해 종합심사낙찰제의 전면 시행과 정착기로 접어드는 표준시장단가 등에도 불구하고 적정공사비 확보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토목공사의 원가율이 100%를 크게 웃도는 현장이 수두룩한 가운데 적정공사비 확보 장치에 따른 원가율 하향조정폭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대형 건설업체 H사의 토목부문 매출액은 2845억원, 매출원가는 2863억원으로 토목부문의 원가율이 100.6%를 기록했다.

▶관련기사 3면

원가율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은 공사비(매출액) 중 자재비와 인건비 등 실제 현장에서 지출한 공사비(매출원가)의 비

토목공사 현장 원가율
100% 넘는 곳 수두룩
종심제·표준시장단가등
적정공사비 확보 장치
제대로 작동돼야

으로 건설사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다. H사가 1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행했다면 6000만원의 영업손실을 봤다는 의미다.

토목공사의 경우 앞서 최저가낙찰제에 따라 확보한 공사물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저가 수주로 인한 채산성 저하가 높은 원가율의 주범으로 분석된다.

또 다른 대형 건설업체 D사와 K사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D사는 도로와 철도 등 토목 현장 곳곳에서 원가율이 100%를 크게 초과했다. 설악~청평 도로 건설공사를 384억3800만원에 수주한 D사는 총 예정원가가 416억9000만원에 달해 원가율이 108.5%를 기록했고, 왜관~가산 도로 건설공사 2공구는 450억9900만원에 수주하고 도 총 예정원가가 468억5800만원으로 103.9%의 원가율을 나타냈다.

K사는 일부 토목공사의 원가율이 140%에 육박했다. 정읍~원덕 1공구 도로 건설공사를 828억7100만원에 따낸 K사는 총 예정원가가 1133억원을 넘어서며 원가율이 136.8%까지 치솟았고 성남

~장호원 5공구 도로 건설공사는 1009억 9600만원에 수주했지만 총 예정원가가 1139억6700만원에 달해 112.8%의 원가율을 기록했다.

원가율이 100%를 웃도는 K사의 토목 현장은 국내외에서 무려 18개에 달했다.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다른 건설사들의 토목 현장 원가율도 100%를 훌쩍 넘는 곳이 한둘이 아닐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많은 토목 현장의 원가율이 100%를 넘어선 것은 최저가낙찰제 중심의 입찰제도 영향으로 볼 수 있다"며 "원가율이 워낙 높아진 탓에 종합심사낙찰제와 표준시장단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원가율의 제자리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남기자 knp@

【 2016.1.12(화) 건설경제 】

적정공사비 확보 장치 '정상가동' 되려면

과거 낙찰률 얹매이는 발주처 ‘숫자’에 대한 집착부터 버려야

올해는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본격 가동된다.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가격은 물론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와 실적공사비를 폐지하고 시장가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종합심사낙찰제와 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그동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공공공사의 원가율을 바로잡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일단 건설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최저가낙찰제와 실적공사비가 폐지되고

**발주처 예산추가 투입 부담에
곳곳에 낙찰률 상승 제한 장치
원가율 바로잡기 어려워져**

종합심사낙찰제와 표준시장단가를 도입하면서 공공공사비 산정 수준이 높아지고 낙찰률도 다소 상승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다만 그 폭이 원가율을 정상궤도로 복귀시킬 만한 수준일지는 미지수다.

실제 지난해 종합심사낙찰제 시행사업 과정에서 일부 발주기관의 낙찰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발주기관들이 낙찰률 상승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낙찰률 상승은 종합심사낙찰제와 표준시장단가 도입에 따른 공공공사비의 정상화 수순이지만 낙찰률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그만큼에 해당하는 예산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기준을 만들면서 단가심사와 관련, 표준시장단가 공종 등 고정비용이 전체 공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세부공종별 입

찰단가 적정성 범위를 ±18%~±22% 사이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고정값에 따라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적정성 범위가 주어지면서 발주기관이 임의 대로 낙찰률을 조정할 수는 없지만 낙찰률이 무한정 올라갈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발주기관이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존 최저가낙찰제상 평균 낙찰률은 73% 수준이다.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한 이후 낙찰률이 80%대로 상승 가능한 것은 그만큼 최저가낙찰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정부와 발주기관이 73%라는 숫자에 연연하게 되면 종합심사낙찰제와 표준시장단가의 연착륙은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서 고정비용 비중에 따라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적정성 범위를 설정한 것도 기존 낙찰률에 지나치게 미련을 둔 결과물이다.

입찰가에 손을 대지 못하는 고정비용의 비중이 클수록 낙찰률이 높아지는 것은 정상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고정비용 비중이 높을 경우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적정성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고정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저가 투찰을 유도해 낙찰률 상승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가율이 상승하면서 현장에서 저가 하도급이 만연하고 숙련 인력과 고품질 자재의 투입을 막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다”며 “종합심사낙찰제가 전면 실시되고 표준시장단가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공공시장의 환경이 크게 바뀐 만큼 과거의 낙찰률에 얹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